근로복지공단 별정직 본부장 모집공고

근로복지공단과 함께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별정직 본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☐ **공모직위:** 1명(강원지역본부장)

☐ **임용기간:**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, 연임 가능 (단, 정년은 60세임)

※ 임용기간 중 본부장의 수행업무 조정에 따라 임용직위가 변경될 수 있으며, 연임될 경우에는 행정직(일반) 1급과 동일한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적용

☐ **주요직무**

○ 지역본부·관할지사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업무

○ 지역본부·관할지사의 예산편성 및 예산결산 업무

○ 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업무

○ 산재보상·요양업무, 산재·고용보험 적용·부과업무, 피보험자관리업무, 복지업무, 소송·수행업무, 산재구상채권 및 부당이득금 회수업무 등

○ 기타 직제규정에서 정한 소관업무

☐ **보수:** 공단 「보수규정」등 제규정에 따름

☐ **자격요건**

○ 채용자격기준

- 공무원 3급직에 재직한 자 또는 4급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
- 공공기관에서 집행간부(이사 또는 본부장 상당직급)로 재직한 자
-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자

• 근로복지공단 1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• 관련분야* 4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자로서 상장기업 부장급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
* (관련분야) 노동 및 산업관련 복지, 행정, 경영, 조직, 인사관리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

○ 인사규정 제14조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(붙임 참조)

□ 전형방법

○ (서류심사)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한 후 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를 면접대상자로 선정

○ (면접심사) 본부장 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면접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추천

○ (최종합격자 결정) 본부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 중 이사장이 결정

□ 제출서류

○ 지원서·자기소개서·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(별첨 소정양식)

- 지원서·자기소개서·직무수행계획서는 공단 홈페이지(www.comwel.or.kr), 고용노동부홈페이지(www.moel.go.kr), 인사혁신처 나라일터홈페이지(www.gojobs.go.kr), 공공기관알리오(www.alio.go.kr)에서 내려 받아 사용

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(별첨 소정양식)

○ 경력증명서 원본 1부

<이하 서류는 면접전형 당일 본인 면접 후 제출>

○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(석·박사의 경우 학위증명서 포함)

○ 주민등록등·초본 각 1부(초본은 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기재된 것)

○ 기타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
□ 전형일정

○ (서류접수기간) **2024. 5. 23.(목) ~ 6. 3.(월) 12:00까지**

- 접수장소: (우44428)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7층 인사운영부
- 접수방법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

※ 마감일 12:00까지 공단 인사운영부 도착분에 한해 접수 가능, 토·일요일(공휴일 포함)에는 접수 불가

-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: **2024. 6. 10.(월)**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 통지

○ (면접심사일) **2024. 6. 12.(수)**

○ (최종합격자 발표) **2024. 6. 14.(금)**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

※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(변경 시 개별 통지)

□ 기타사항

○ 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,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 증명서 제출 시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.

○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요청(반환청구서 작성) 할 수 있으며, 그 밖의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사항은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인사운영부(052-704-7042, 704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5월 23일

근로복지공단 이사장

[붙임] 결격사유

인사규정 제14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6의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의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6의4. 공단 입사 이전 또는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7.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
8.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,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
9.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염성 질환자 및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인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된 자
10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1.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